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마목 중 “위험평가액”을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이하, “스왑거래”라 한다)를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

제9조제1항제3호가목 중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위험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스왑거래를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

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위험 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 방법의 종류) 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생 략)</p> <p>2.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p> <p>가. ~ 라. (생 략)</p> <p>마.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u>위험평가액이</u>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p> <p>바. <신 설></p>	<p>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 방법의 종류) ① ----- ----- -----. 1. (현행과 동일) 2. ----- ----- -----.</p> <p>가. ~ 라. (현행과 동일)</p> <p>마.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u>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이</u>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p> <p>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이하, "스왑거래"라 한다)를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p>

	<p><u>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u></p>
3.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3. ----- ----- -----.
가.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u>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u>	가.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u>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u>
나. <신 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스왑거래를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	
연락처	(02) 2156 - 9694